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변경
-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와 제5조)
- 치과치료 제공자 및 치과치료비 신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8조와 제9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와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사업명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목적으로 제출됨.

#### ○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명과 수혜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전체 조문에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사업명 변경을 반영하여 “치과주치의”는 “치과치료 지원”으로 “치과주치의료비”는 “치과치료 지원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 수혜 대상자 변경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으로 정비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

#### ○ 검토결과

-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지원사업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 학생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학생 및 아동”에서 “아동”으로 축소되면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또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관내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나, 종전 조례에서는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만이 규정되어 있었기에, 개정 조례에서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역협의체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던 것을 보건소장으로 명시한 안 제8조의 개정 사항은 회의 소집, 의제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제644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변경
- 나.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 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마.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와 제5조)
- 바. 치과치료 제공자 및 치과치료비 신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사.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8조와 제9조)
- 아.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와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구강보건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보건의료 기본법」 제4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인권영향평가: 별도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개선 요청 사항 반영

라. 입법예고(2025. 10. 2.~10. 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행위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아동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 한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아동 치과치료비 신청)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과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나.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